

하남시고시 제2025-205호

하남 도시관리계획(예동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실효) 고시

1. 하남시고시 제2020-133호(2020.10.29.)로 고시된 하남 도시관리계획(예동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제2항에 따라 실효되었으며 지정 당시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되었음을 같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고시합니다.
2. 관련 도서는 하남시청 도시정책과 (☎031-790-525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2025. 12. 19.

하 남 시 장

가. 실효일자 : 2025. 10. 30.

나. 실효사유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·인가·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

다. 실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 : 하남시고시 제2020-133호(2020.10.29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관리계획
※ 경기도고시 제2010-11호(2010.01.22.)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

라.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관련도면: 게재생략

※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 조서 및 관련도면은 경기도고시 제2010-11호(2010.01.22.)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및 지형도면으로 환원되며, 세부 결정조서 및 지형도면은 해당 고시내용으로 갈음함